

# 구미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br>번호 |  |
|----------|--|

제출년월일 : 2010.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 1. 개정이유

-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향토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향토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 향토기업(본점 등록 20년 경과, 고용인원 30인 이상)이 공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재산세 50% 감면 (안 제25조의2)

## 3. 조례개정안 : 붙임

## 4.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5. 참고사항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1455(10.5.12)호 감면조례 허가

## 구미시 조례 제 호

### 구미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에 제25조의2를 다음과 신설 한다.

제25조의2(향토기업에 대한 감면) 구미시에서 본점 사업자 등록을 한지 20년이 경과하고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중 과세기준일 현재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제25조의2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 신·구 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개정사유                |
|---------|------------------------------------------------------------------------------------------------------------------------------------------------------------------------------------------|---------------------|
| < 신 설 > | <u>제25조의2(향토기업에 대한 감면) 구미시에서 본점 사업자 등록을 한지 20년이 경과하고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중 과세기준일 현재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u> | ○ 향토기업에 대한 감면 규정 신설 |